
2018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명지대학교

목 차

I . 지원자 유의사항	3
II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5
III . 전형일정	7
IV . 지원자격	8
V . 지원자격 심사기준	9
VI . 전형방법	13
VII . 원서접수	14
VIII . 전형료	15
IX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6
X . 서류제출	17
XI . 참고자료	20

부록[양식모음]

<input type="checkbox"/> 학력조회 동의서	22
<input type="checkbox"/> 재학·근무기간 기록표	23

I.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 및 등록

1.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포함한 수시모집의 지원횟수는 6회 이내로 지원이 가능(산업대 및 전문대 제외)하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2. 신입학 전형에서 2개 이상의 대학에 중복 합격한 학생은 반드시 하나의 대학교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중 등록 시에는 등록한 모든 대학교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수시모집의 최종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대학교 및 타 대학교의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사항

1. 전형기간 중 지원자에게 알리는 공지사항과 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 통보하지 않고 입시홈페이지 공지를 원칙으로 하며, 미확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수험기간 중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본교 입학팀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연락이 두절되어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3. 면접고사에 응시하는 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우리 대학교가 정한 수학능력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5.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는 합격증, 등록금고지서, 합격자 유의사항 등을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등록 및 최종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등록(납부)하지 않은 합격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무효 처분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형료, 입학금,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위의 사항으로 합격(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합격(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7. 입학전형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8. 우리 대학교에 원서 접수를 함으로써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입학전형을 위한 자료 및 대학 정보 안내의 목적으로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지침 및 일반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 또는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 학사관련 사항

1. 우리 대학교의 모든 학생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진리·봉사의 대학이념 실현과 전인교육을 위해 재학 중 **성서의이해(2학점)**과 **채플(4학기)**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신입생은 학칙에 명시된 경우(의무군복무와 질병으로 인한 휴학)를 제외하고 입학 후 첫 학기를 휴학할 수 없습니다.
3. 모든 신입생은 지정된 교양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공과대학 전 학과는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경영대학 전 학과는 경영학인증프로그램에 의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융합전공학부(인문)**는 2학년 진급 시 인문캠퍼스 소속의 학과를 선택(단, 미래융합대학, ICT융합대학은 선택 제외)하고, 대학에서 개설하는 연계전공 중 1개의 연계전공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대학에서 개설하는 연계전공은 학칙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공과대학 융합공학부**는 2학년 진급 시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중 학과를 선택하여야 하며, 스마트임베디드기계시스템공학을 연계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과(전공)선택은 단과대학 및 학부의 학과(전공) 선택 기준에 따릅니다.
6. **전공자유학부** 학과 배정 원칙: 2학년 진급 시 학과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인문) 인문캠퍼스 소속의 학과 선택(단, 디지털미디어학과 20명, 경영학과 36명, 국제통상학과 20명, 경영정보학과 6명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며, ICT융합대학 및 미래융합대학은 선택 제외)
(자연) 자연캠퍼스 공과대학 소속의 학과 선택(단, 전자공학과 20명, 컴퓨터공학과 20명까지만 선택 가능)
7. **미래융합대학 창의인재융합인재학부**: 2학년 진급 시 미래융합대학 소속의 학과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8. **건축학부 및 컴퓨터공학과** 입학생은 전과는 가능하나 다전공은 불가합니다.
9. **미래융합대학**의 모집단위 입학생은 미래융합대학 내에서만 다전공과 전과가 가능합니다.
10. **미래융합대학**의 모집단위(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수업은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주말수업 및 인터넷 수업을 병행합니다.
11. 전과 신청자격은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다만, 전공자유학부 및 단과대학 또는 학부 단위 모집 입학생은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서 전출학부(과) 성적이 평균평점 2.5 이상인 자, 학칙 제59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전과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1. 건강검진은 최종 등록자에 한하여 실시합니다.(2018년 3월 중 실시예정)
2. 건강검진 결과 전염성 등 수학에 지장을 주는 질환자는 치료 시까지 (병고)휴학과 같은 학교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교포(영주권자) 자녀, 해외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캠퍼스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캠퍼스 (서울)	인문대학	어문학부	중어중문학과★	3	
			일어일문학과★	3	
			영어영문학과★	4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4	
			경제학과	3	
			정치외교학과	4	
			디지털미디어학과	3	
	경영대학	경영대학	경영학과★	4	
			국제통상학과★	4	
			경영정보학과	3	
	법과대학	법학과★		4	
	인문 캠퍼스 소계				39
	자연캠퍼스 (용인)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2
생명과학정보학과				2	
공과대학		화공신소재환경공학부	화학공학과★	2	
			환경에너지공학과	2	
		기계산업경영공학부	기계공학과★	2	
			산업경영공학과	2	
		컴퓨터공학과★	2		
자연 캠퍼스 소계				14	
총 계				53	

※ ★표는 교직과정 개설학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졸업 시에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단, 식품영양학과는 영양교사 2급)

※ 교육부 정원인가 조정 등에 의하여 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우리 대학교가 정한 수학능력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리 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후보자를 총원 선발합니다.

2.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은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우리 대학교의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선발합니다.

■ 인문캠퍼스(서울)

단과대학	모집단위	
인문	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동학부	아랍지역학과★
	인문학부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문예창작학과
사회과학	행정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아동학과★	
	청소년지도학과★	
경영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학과	
법과	법학과★	
전공자유학부(인문)		
융합전공학부(인문)		
ICT융합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부	
미래융합	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 자연캠퍼스(용인)

단과대학	모집단위	
자연과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정보학과	
공과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화공신소재환경공학부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교통공학부	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
	기계산업경영공학부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융합공학부		
ICT융합	정보통신공학과	
전공자유학부(자연)		
예술체육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영상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스포츠학부	체육학, 스포츠산업전공★
		스포츠지도학전공[야]
		바둑학과
	예술학부	피아노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영화전공★		
뮤지컬공연전공★		
건축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전통건축전공
		공간디자인전공
국제학부		

※ ★표는 교직과정 개설학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졸업 시에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단, 문헌정보학과는 사서교사 2급, 아동학과는 유치원정교사 2급, 청소년지도학과는 전문상담교사 2급, 식품영양학과는 영양교사 2급)

※ 교육부 정원인가 조정 등에 의하여 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원서접수	2017. 7. 4 (화) 10:00 ~ 7. 7 (금) 17:00 까지	인터넷 접수(http://ipsi.mju.ac.kr) 기간 내 24시간 접수
서류제출	2017. 7. 4 (화) ~ 7. 12 (수)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면접고사장 발표	2017. 8. 1 (화) 15:00 예정	입시홈페이지(http://ipsi.mju.ac.kr)
면접고사	2017. 8. 5 (토)	인문캠퍼스(서울)에서 실시
합격자 발표	2017. 8. 10 (목) 15:00 예정	입시홈페이지(http://ipsi.mju.ac.kr)
합격자 등록	2017. 12. 18 (월) ~ 12. 21 (목)	문서 등록
충원합격자 발표	2017. 12. 22 (금) ~ 12. 27 (수) 21:00 까지	입시홈페이지 발표 또는 전화 개별통보
충원합격자 등록	충원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입시홈페이지 별도 안내
최종 등록금 납부	2018. 1. 31 (수) ~ 2. 2 (금) 16:00	입시홈페이지 별도 안내

※ 상기 전형일정은 우리 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전형일정 및 안내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서류 미제출, 면접고사 결시, 미등록 등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지원자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부모의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지원자의 경우 최소 해외 재학기간 동안 부모가 동반 근무, 거주(영주)하여야 합니다.

지원자격		자 격 요 건	재학기간 조건
교포(영주권자)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자)의 자녀	
해 외 근 무 재 외 국 민 의 자 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중이거나 근무 후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	*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 * 비연속으로 재학한 경우에는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년 이상 재학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중이거나 근무 후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중이거나 근무 후 귀국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독립교회연합회, 한국교회연합에서 인정하는 종교단체에서 해외에 파견되어 2년 이상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 후 귀국한 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 자녀	적법한 절차로 외국에서 근무 중(자영업, 현지법인 근무)이거나 근무 후 귀국한 자의 자녀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초·중·고교 전 과정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외국인인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지원문의 : ☎ 02-300-1513)

※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변경사항 안내

학생 이수 기간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체류기간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V. 지원자격 심사기준

1. 해외근무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인정범위

구 분	인 정 범 위
해외근무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해외근무 상사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외국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국제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기타 재외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의 해외거주 유형 : 자영업, 현지법인 근무

2. 특례요건 인정기준[재학·근무·거주(영주)기간]

자 격 구 분	특례요건 최소 산정 기간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교포(영주권자) 자녀	2년 (3년)	2년 (3년)	1년 6개월 (2년)	—	2년 (3년)	1년 6개월 (2년)	2년 (3년)	1년 6개월 (2년)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2년 (3년)	2년 (3년)	1년 6개월 (2년)	2년 (3년)	2년 (3년)	1년 6개월 (2년)	—	—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2년 (3년)	2년 (3년)	1년 6개월 (2년)	2년 (3년)	2년 (3년)	1년 6개월 (2년)	2년 (3년)	1년 6개월 (2년)
기타 재외국민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해외) 재외국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12년 혹은 해당국의 학제에 맞는 기간			—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확인			—			—	

※ () 안의 기간은 비연속일 경우에 해당함

3. 외국학교 인정기준

가. 보호자의 근무국에 소재한 정규교육과정 내의 학교만 인정합니다. 다만, 보호자 근무국의 지역·종교·전쟁 등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보호자의 근무 지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나.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원 등의 교육기관 및 외국검정고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해당 학교에서 성적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그 기간 중 국내 체류기간이 1학기 당 1개월 미만일 때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재학기간 인정기준

- 가. 해외 고등학교 과정을 연속 2년 이상 재학했을 경우 특례요건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나. 해외 고등학교 과정을 최소 1년 이상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연속 2년 이상 재학했을 경우 특례요건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다.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해외에서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고교과정을 해외에서 재학했을 시 특례요건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라. 해외 고교 졸업예정인 경우에는 재학기간 산출을 졸업 예정일까지로 합니다. 단, 2018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여야 하며, 학제 상 고교졸업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 2018년 3월 졸업까지 인정합니다.
- 마. 재학기간은 학년(Academic Year) 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바.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중·고교과정 연속 2년 이상 =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교과정 연속 4학기 이상, 3학기제인 경우 연속 6학기 이상, 쿼터제인 경우 연속 8학기 이상)
- 사. 학제차이 등으로 인하여 국내 수학기간과 외국 수학기간이 중복되었을 경우 1개 학기(6개월)까지 해외 재학기간(특례요건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아. 전·편입 과정에서 결손 학기가 있을 경우 중복학기를 제외한 총 재학 학기 수가 11년(22학기)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 자.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증빙서류(학교발급 사유서, 관련규정 등)를 제출하면 총 재학 기간이 부족하더라도 인정합니다.
- 차.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학제(12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 교육과정	국내 교육과정
1 ~ 6학년 과정(Grade 1 ~ Grade 6)	초등학교 과정
7 ~ 9학년 과정(Grade 7 ~ Grade 9)	중학교 과정
10 ~ 12학년 과정(Grade 10 ~ Grade 12)	고등학교 과정

- ※ 10학년 학제의 해외 고교를 졸업한 경우 12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대학에서 이수(수료)하거나,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 11학년 학제의 해외 고교에서 마지막 3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인정합니다. 단, 11학년 학제의 해외 고교에서 3년 미만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대학에서 이수(수료)하거나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인정합니다.
- ※ 13학년 학제의 해외 고교에서 12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합니다.
- 카. 지원자가 해당국가에서 실제 체류하지 않은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교소재 국가를 이탈한 후 복귀한 경우는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타. 다음 2가지의 경우에는 재학기간(특례요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외 고교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과정으로 편입학한 경우
 - 해외 고교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고교과정에 신입학한 경우

5.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인정기준

- 가.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학년)을 전부 이수하였을 경우에 인정합니다.
- 나. 10학년제 또는 11학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고교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로 인정됩니다.
- 다. 13학년제 국가에서 12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경우 지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 라. 해외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교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 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인정합니다.
- 마.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총 재학 기간이 부족하더라도 인정합니다.
- 바.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의 지원 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 거주 및 체류기간 등에 대한 조건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6. 근무, 거주 및 체류기간 인정 기준

- 가. 근무기간은 증명서(재직 및 경력증명서) 상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 나. 거주기간 및 체류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합니다.
- 다. 영주권자의 거주(영주)기간은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을 뜻합니다.
- 라. 현재 계속 근무, 거주(영주), 체류 중일 경우 그 기간을 학생의 졸업예정일까지로 산정합니다.
- 마. 보호자의 근무, 거주(영주), 체류기간은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합니다. (보호자가 소속 기관(회사)의 공식적인 발령이 아닌 개인적인 유학, 교육, 연수, 안식년, 여행 등으로 해외에 근무/거주하는 기간은 제외)
- 바. 교포 자녀의 경우 부모 영주권 취득 후(부모의 영주권 취득 시점이 다를 경우 늦은 시점 기준) 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 사.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배우자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학생의 재학기간 중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이전까지 배우자의 해외 거주 사실을 확인합니다.

VI.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단위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점수
해당 모집단위	일괄전형	면접고사 100% (300점)

2. 면접고사

구 분	내 용	비 고
면접시간/장소 발표	2017. 8. 1(화) 15:00 예정	입시홈페이지 발표
면접고사일	2017. 8. 5(토)	오전/오후
평가항목	○ 성실성/공동체 의식 ○ 전공 잠재역량 ○ 전형취지 부합도	
면접방법	수험생 1인 약 5분 내외	면접위원 2~3인

※ 면접대기실에서 간략한 자기소개서 형태의 면접기초자료를 약 20분간 작성(A4용지 1매 분량)하며, 이는 평가점으로 반영되지 않고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전형에서 예술체육대학 내 모집단위의 경우 면접고사 시 간단한 실기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음

3. 선발기준

가. 모집인원의 100%를 면접고사 성적순위에 의하여 선발합니다.

(단,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우리 대학교가 정한 수학능력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면접고사에 결시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고사 성적이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중 성실성/공동체의식, 전공잠재역량 순으로 선발합니다.

Ⅶ. 원서접수

1. 원서접수 기간 : 2017. 7. 4 (화) 10:00 ~ 7. 7 (금) 17:00 까지

- 입시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원서접수 대행업체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입학원서를 접수합니다.

2. 원서접수 절차



3. 원서접수 유의사항

- 가.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실시합니다.
- 나. 본인의 사진파일은 미리 반명함판 사진(3x4cm)을 스캔하여 jpg, gif 파일로 저장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사진만 가능합니다.
- 다. 전형료 결제 후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사항의 수정, 전형료 반환이 불가능하니 전형료 결제 전에 반드시 입력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입학원서 필수 입력사항의 누락 또는 표기의 잘못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마.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인터넷 원서접수 업체에서 완료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확인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바. 원서접수 완료 후 서류제출 기간 내에 해당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모든 지원자는 면접고사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VIII. 전형료

구 분	전형료
재외국민	120,000원
북한이탈주민	70,000원

1.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은 우리 대학교에서 부담합니다.
2. 원서접수 완료 이후에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면접고사에 결시한 경우에도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전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형료 반환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우리 대학교 내부 심의를 거쳐 전형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전형료 반환
 - 우리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2018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합니다.
 -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방법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입력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본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반환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X.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합격자 발표

구 분	발표일	발표방법
재외국민 특별전형	2017. 8. 10 (목) 15:00 예정	입시 홈페이지(http://ipsi.mju.ac.kr)

가. 합격 여부 확인은 합격자 발표일 우리 대학교 입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합격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나. **충원합격자 발표는 2017. 12. 22(금) ~ 12. 27(수) 21시까지** 입시홈페이지 발표 또는 전화 개별 통보 합니다. 입시홈페이지 발표를 확인하지 않거나 전화 개별 통보 시 입학원서에 입력한 연락처의 오류 또는 연락두절(연락처 변경 등)로 인하여 합격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3회 이상 수신 불가)에는 차순위자를 충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합격자 등록

구 분	등록기간	금액	등록방법
문서 등록	2017. 12. 18(월) ~ 12. 21(목)	-	입시 홈페이지 안내 (http://ipsi.mju.ac.kr)
등록금 납부	2018. 1. 31(수) ~ 2. 2(금)	추후 안내	

가. 문서 등록기간에 문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포기로 처리 합니다.

나. 충원합격자의 등록은 충원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됩니다.

다. 합격통지서와 등록금고지서는 인터넷으로만 교부합니다.[합격자 본인 직접 출력]

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학부모님과 합격자는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등록 포기

가. 우리 대학교에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2017. 12. 27(수) 20:00까지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방법 : 우리 대학교 입시 홈페이지(<http://ipsi.mju.ac.kr>)에 접속하여 "등록포기 신청" 클릭

다. 유의사항

- 1) 수시 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즉시 등록포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 등록 포기 신청 완료 후에는 이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 3) 등록 포기 신청기간 경과 후 등록포기를 하는 경우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X. 서류제출

1. 서류 제출기간 : 2017. 7. 4 (화) ~ 7. 12 (수)

2. 제출방법

- 가. 방문 제출 : 본교 인문캠퍼스(서울) 행정동 1층 입학팀
 - ▶ 평일 9시 ~ 17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 10시 ~ 15시까지 제출 가능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나. 등기 우편 :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팀
 - ▶ 2017년 7월 12일 우체국 소인 분까지 인정
 -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표지 출력 후 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제출
- 다. 도착 확인 : 입시 홈페이지(<http://ipsi.mju.ac.kr>)에서 확인

3. 서류제출 유의사항

- 가.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할 경우 원본과 사본을 각각 1부씩 지참하여 우리 대학교 입학팀에 방문하여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나.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시작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단, 해외발급서류의 경우 해외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서류는 유효합니다.
- 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해외 고교 졸업예정자는 합격 후 2018년 2월 28일 이전까지 졸업증명서를 우리 대학교 입학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에는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 주소, 국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바. **해외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 거주국의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발급대상서류 : 해외 초·중·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보호자 재직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
 -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및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학교장 직인(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조기졸업 및 월반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지원자는 해당 학교의 사유서 및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보호자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호자 사망·실종·직권말소 등 가족관계 특이자인 경우 제적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카.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타.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동일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파.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4. 제출서류

지원자격 구분	제 출 서 류
교포(영주권자) 자녀	① 입학원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② 재학/근무기간 기록표(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④ 초·중·고교 성적증명서(국내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⑤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명의) ⑥ 주민등록말소등본(제적등본)- 학생, 부, 모 ⑦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 학생, 부, 모 ⑧ 출입국사실증명서- 학생, 부, 모 ⑨ 영주권 사본- 학생, 부, 모 ⑩ 학력조회 동의서(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⑪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① 입학원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② 재학/근무기간 기록표(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④ 초·중·고교 성적증명서(국내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⑤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명의) 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 학생, 보호자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학생, 보호자 ⑧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⑨ 학력조회 동의서(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⑩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① 입학원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② 재학/근무기간 기록표(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④ 초·중·고교 성적증명서(국내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⑤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명의) 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 학생, 보호자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학생, 보호자 ⑧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⑨ 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승인서 사본 (발급 기관 원본대조필) ⑩ 학력조회 동의서(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⑪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① 입학원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② 재학/근무기간 기록표(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④ 초·중·고교 성적증명서(국내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⑤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명의) 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 학생, 보호자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학생, 보호자 ⑧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⑨ 학력조회 동의서(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⑩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

지원자격 구분	제 출 서 류
유치과학자 · 교수요원 자녀	① 입학원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② 재학/근무기간 기록표(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④ 초·중·고교 성적증명서(국내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⑤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명의) 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 학생, 보호자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학생, 보호자 ⑧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⑨ 정부초청·추천에 관한 증빙서류 ⑩ 학력조회 동의서(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⑪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① 입학원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② 재학/근무기간 기록표(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④ 초·중·고교 성적증명서(국내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⑤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명의) 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 학생, 부, 모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학생, 부, 모 ⑧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⑨ 파송증명서(파송국가 및 파송기간 명시) ⑩ 학력조회 동의서(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⑪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재외국민 자녀 -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① 입학원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② 재학/근무기간 기록표(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④ 초·중·고교 성적증명서(국내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⑤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명의) 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 학생, 부, 모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학생, 부, 모 ⑧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⑨ 외국정부가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⑩ 법인세 납부증명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지원자격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⑪ 학력조회 동의서(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⑫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① 입학원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② 재학/근무기간 기록표(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③ 초·중·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④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확인서(학생 명의) ⑥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명의) ⑦ 학력조회 동의서(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의 경우 국적취득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북한이탈주민	① 입학원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② 재학/근무기간 기록표(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 후 출력 제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④ 학력인정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학력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⑤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국내 재학 사실이 있는 경우)

XI. 참고자료

※ 전년도 입시 참고자료(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제외)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3	22	7.3
	일어일문학과	3	11	3.7
	영어영문학과	4	20	5.0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4	13	3.3
	경제학과	3	8	2.7
	정치외교학과	4	10	2.5
	디지털미디어학과	3	31	10.3
경영대학	경영학과	4	23	5.8
	국제통상학과	4	23	5.8
	경영정보학과	3	15	5.0
법과대학	법학과	4	9	2.3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2	7	3.5
	생명과학정보학과	2	5	2.5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2	12	6.0
	환경에너지공학과	2	10	5.0
	기계공학과	2	16	8.0
	산업경영공학과	2	20	10.0
	컴퓨터공학과	2	9	4.5
계		53	264	5.0

※ 생활관(기숙사) 안내

◆ 인문캠퍼스(서울) 생활관 ◆

홈페이지 : <http://sdorm.mju.ac.kr>

연 락 처 : 02-300-1768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내)

규 모 : 연면적 약 11,940m²(3,612평)의 9층 건물

수용인원 : 864명

부대시설 : 체력단련실, 편의점, 세탁실, 간이취사실, 카페, 무인출력기, 멀티자판기

입사자격 : 인문캠퍼스 합격자

선발기준 : 입사신청 기간(추후 별도 공지예정) 내 신청한 신입생 중 선발
생활관 수용인원 초과 시 거리 점수 적용

◆ 자연캠퍼스(용인) 생활관 ◆

홈페이지 : <http://dorm.mju.ac.kr>

연 락 처 : 031-330-6077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내)

규 모 : • 명현관(지하1층, 지상5층) / 명덕관(지하1층, 지상5층)
• 제3생활관 3동(지하1층, 지상5층) / 4동(지하1층, 지상10층) / 5동(지하1층, 지상10층)

수용인원 : 1,868명

부대시설 : 체력단련실, 빨래방, 식당, 현금지급기, 편의점, 스낵코너, 휴게실, 열람실, 탁구장, 카페

입사자격 : 자연캠퍼스 합격자

선발기준 : 입사신청 기간(추후 별도 공지예정) 내 신청한 신입생 중 선발
생활관 수용인원 초과 시 거리 점수 적용

※ 입시상담

- 문 의 : 02-300-1799, 1800

- 홈페이지 : <http://ipsi.mju.ac.kr>

- 주 소 : [인문캠퍼스]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행정동 1층

[자연캠퍼스] 170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창조·예술관 4층

학력조회 동의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서류심사 서류로 제출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명지대학교가 지원자 본인의 학적 및 성적을 조회함을 동의합니다.

성 명 : _____(서명) 생년월일 : _____

순번	학교명	학교 주소	재학기간
		학교 전화 / 팩스 / 학교 홈페이지	
1		~
2		~
3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후 출력		~
4		~
5		~
6		~
7		~
8		~

2017. . .

명 지 대 학 교 입 학 처 귀하

